

October 15, 2026

[판례] 대법원, 미국 LLC의 한·미 조세조약 적용 범위와 특허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기준 제시 (2024두65607)

I.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 두 65607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이다.

원고들은 2014. 12. 24.과 2015. 12. 11. 두 차례에 걸쳐 J 주식회사에 반도체 기술에 관한 특허를 합계 미화 640 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J 주식회사는 2015. 1. 22.과 2016.1. 7.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그 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5. 11. 12.과 2016. 5. 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쟁점①) 투과과세단체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및 범위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어떠한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었음에도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고들을 미국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C 과 D 스스로가 또는 그 구성원들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쟁점②) 특허 양도소득이 한·미 조세조약 제 14 조 제 4 항 제 b 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미 조세조약 제 16 조 제 1 항에 의하여 '자본적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는데, 한·미 조세조약은 '자본적 자산'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미 조세조약의 '문맥'(context)에 따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조세조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르면 '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위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되는데, 특허는 위 '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는 한·미 조세조약 제 16 조 제 1 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 제 6 조 제 7 항의 '개인재산'에는 특허가 포함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소득은 위 조항에 따라 그 특허가 매각되는 장소에 원천을 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특허의 매각 장소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야 한다.

3. 시사점

대법원은 미국 투과과세단체와의 거래에서 거주자 판단 기준과 IP 양도대가에 대해 어떤 소득조항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종래에도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독일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중략)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안에서 한·독 조세조약 제 10 조 제 2 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 두 7711 판결), 이른바 가분적 거주자 이론에 따른 판단을 하여 왔다. 본 판결의 경우도 종전의 판결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미국 등 해외의 투과과세단체와 거래할 때에는 조세조약의 내용 등에 기초하여, 수령법인의 법적 형태뿐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의 세법상 취급, 및 상위 구성원 구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약상 거주자증명서가 어느 주체의 어떤 납세지위를 확인하는 서류인지, 전체 지분에 대한 조약 적용을

뒷받침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납세자들이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특허·기술 등 IP 양도계약에서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배제되는지도 해당 규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다. 추상적인 과세권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의미와 연혁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그 적용 범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약의 다른 면제 규정과 조항과 원천지 규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관련 구성원

장성두

변호사

T 02.3404.6585

E sungdoo.j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